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31호 2026. 9. 1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94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95호)

공 고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1199호)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준공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시행계획 승인)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기반 정비사업 (개간)	예천	개포	이사	산106	4,476	2023.11.09.~ 2026.08.31	303,200	신 대 O
				171-2	37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예천	청북	산12	2,050	2026.08.31. ~ 2027.08.31.	31,000	전 재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연료비, 전기료 등 온천장 운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군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타 지역 이용객에 대한 온천사용료를 차등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장 사용료 요금 인상(안 별표)

- 예천군민 온천장 사용료 조정
 - 일반요금 : 기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 경로 및 할인요금 :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 외지인 온천장 사용료 조정
 - 일반요금 : 기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 경로요금 : 기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
- 월 정기권 온천사용료 조정 : 기존 “10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인상

나. 다복가정 희망카드 감면대상 기준 현행화(안 제6조제1항제4호)

- 기존 :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 변경 :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막내자녀가 19세 이하인 가정의 세대 전원”

다. 온천장 정기휴장일 변경(안 제8조제4항제1호)

- 기존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을 “매주 화요일”로 변경

라. 조례 개정 전 발행된 예매권의 사용기한 설정(부칙)

-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예매권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 마. 입법예고 : 9월 중 추진 예정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온천지구”를 “예천군 온천지구”로,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을 “예천온천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온천장”을 “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자녀가 19세 이하인 가정의 세대 전원

같은 조 제3항 중 “증표”를 “서류”로 한다.

제7조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아야”를 “따라야”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매월 둘째, 넷째주”를 “매주”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매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이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예매권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26. 00. 00.>

은천장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요 금
예천군민	일 반	7,000원
	경 로	5,000원
	활 인 공 통	5,000원
외 지 인	일 반	8,000원
	경 로	6,000원
단 체 (30인 이상)		5,500원
월 정기권(30일)		12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예천군온천지구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예천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u> 을 설치하고 온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예천군 온천지구</u> ----- ----- ----- <u>예천온천장</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란 <u>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	3. ----- <u>온천장(이하 “온천장”이라 한다)</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온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기타</u> 온천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u>그 밖에</u> ----- -----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	제6조(사용료) ① ----- -----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5.·6. (생략)

② 온천을 자주 찾는 이용객에 혜택을 주고 이용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월정기권 제도를 신설하여 월정기권 이용객에 한하여 온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관리) 온천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예천군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① 온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규정에 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정으로서 막내자녀가 19세 이하인 가정의 세대 전원

5.·6. (현행과 같음)

② -----

----- 한정
하여 -----
--.

③ -----
----- 서류-----
-----.

제7조(수입관리) -----

----- 납입-----
-----.

제8조(관리운영) ① -----

----- 따

하여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는 온천장(목욕탕 등)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온천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2. (생 략)

제11조(감독 및 조사)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업장, 기타 장소 등에 출입하여 감독 및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라 -----.

② ----- 따라 -----
----- 상호 간 -----

-----.

③ -----

----- 따라야 -----
-----.

④ -----
-----.

1. 매주 -----
2. (현행과 같음)

제11조(감독 및 조사) -----

----- 그 밖에 -----

-----.